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의안번호	2305
------	------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305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2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현황

- 기금은 관련 법령 또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전입금·기부금·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이 '2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24년도와 동일한 5개 기금으로,
 - ①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②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③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④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⑤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임

〈표 2-1〉 기금 현황 (5개 기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007	기한없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함	안전총괄담당관 (기금관리운영: 학교안전공제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0	'29.12.31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2021	'26. 7.2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 전환 교육의 내실있는 추진	초등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	기한없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	교육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2016	'25.12.3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필요 자원 연차적 적립·조성	청사이전추진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234 ('24.11. 1)

(2) 기금 조성규모

□ 5개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은 1조 2,554억 7,900만원으로 계획된 바, '24년도말 조성액(1조 3,727억 1,500만원)보다 △8.5%, △1,172억 3,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2-2〉 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4년도말 조성액 ^{주1)}	'25년도 기금운용계획 ^{주2)}		'25년도말 조성액	증 감 액	증 감 륜
	(A)	수	입 지	출 (B)	(C=B-A)	(C / A)
합 계	1,372,715	81,525	198,761	1,255,479	△117,235	△8.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567	17,904	14,474	4,997	3,430	218.7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57,439	25,344	-	382,784	25,344	7.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 전환 교육 기금	450	15	-	465	15	3.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44,931	30,945	108,644	867,232	△77,698	△8.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68,326	7,316	75,642	-	△68,326	△1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234 ('24.11. 1)

주1) '24년도말 조성액(A) : '24년도말 기금결산액 추정치

주2) '25년도 기금운용계획 :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예치금회수'와 '예치금' 금액은 제외

(3) 기금 운용계획

- 5개 기금의 '25년도 운용계획은 총 1조 4,542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 계획(2조 1,067억 3,300만원)보다 △31.0%, △6,524억 9,100만원 감소한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금년도(155억 1,300만원)보다 25.5%, 39억 5,800만원 증가한 194억 7,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도(6,874억 3,900만원)보다 △44.3%, △3,046억 5,500만원 감소한 3,827억 8,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금년도(4억 5,000만원)보다 3.3%, 1,500만원 증가한 4억 6,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금년도(1조 2,679억 1,100만원)보다 △23.0%, △2,920억 3,400만원 감소한 9,758억 7,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은 금년도(1,354억 1,700만원)보다 △44.1%, △597억 7,400만원 감소한 756억 4,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2-3〉 기금 운용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5(안)	2024	증감액	증감률
합계	1,454,241	2,106,733	△652,491	△3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19,472	15,513	3,958	25.5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382,784	687,439	△304,655	△44.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65	450	15	3.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5,876	1,267,911	△292,034	△23.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건립기금	75,642	135,417	△59,774	△44.1

(4) 기금의 존속기한

- 관련 법령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이 '25년도에 운용할 5개 기금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 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개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3개 기금의 경우에는 모두 존속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관련 법령은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4년 12월 31일로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을 통해 '29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의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25년 12월 31일로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24.11.28)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검토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기금별 운용 방향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의 「2025~202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는 기금별 운용방향 및 기금 정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나,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의 경우, 기금수입이 '25년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정비계획상 '25년도에 신청사 건립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동 기금 존속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 결과와 연동하여 중기기금 계획도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관련된 쟁송(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기금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출된 '25년도 중기기금 계획에는 예치금을 제외하고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인 '26년 7월 21일까지의 기금수입 전망과 정비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표 2-4〉 중기 기금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합계	1,454,241	1,367,720	1,504,993	1,658,124	1,865,984	6.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건립기금	75,643	-	-	-	-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5,877	895,230	809,058	743,734	752,437	△6.3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2,784	449,124	671,086	886,721	1,081,951	29.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9,472	22,893	24,849	27,669	31,596	12.9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65	473	-	-	-	△1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202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27

〈표 2-5〉 중기 기금정비계획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정비 유형	기금 존속기한 ^{주1)}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건립기금	75,643	-	-	-	-	△100.0	유지 ^{주2)}	2025.12.3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65	473	-	-	-	△100.0	폐지 ^{주3)}	2026. 7.2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202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44, 재구성

주1) 기금 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의미함

주2) 유지사유 : 신청사 건립 사업 지속 추진(기금 존속기한 2027.12.31까지 연장 예정)

주3) 폐지사유 : 일반재원으로 목적 달성 가능('23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 중)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검토

- 관련 법령은 기금운용계획안에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5개 기금중 적립성 기금인 ①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과 ②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그리고 ③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제외하고, 사업성 기금인 ④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⑤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은 성인지 예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는 바, '25년도에는 2개 사업, 734억 4,600만원을 계획한 것으로 검토됨

〈표 2-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업개수	2025년 계 획 액 (A)	2024년 계 획 액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 / B)
계	2	73,446	75,633	△2,187	△2.9
양 성 평 등 정 책 추 진 사 업	-	-	-	-	-
성 별 영 향 평 가 사 업	-	-	-	-	-
교 육 부 지 정 사 업	-	-	-	-	-
자 체 선 정 사 업	2	73,446	75,633	△2,187	△2.9

※ 자료근거 :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p.24, p.67, 재구성

2. 기금별 검토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 조성규모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이하 ‘공제기금’ 이라 함)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관리·운용하는 기금임
-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운용하는 기금이나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타 시도교육청의 법령해석 의뢰에 따라 관련 법령상의 기금에 해당되어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동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49억 9,7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된 바, '24년도말 조성액(15억 6,700만원) 대비 218.7%, 34억 3,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2-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24년도 말 조성액 (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 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증감률 (e/a)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1,567	17,904	14,474	4,997	3,430	218.7

- 금년도보다 '25년도 말 조성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기타지원금이 '24년도(26억 1,400만원) 보다 6억 5,800만원 증가하고, 학교안전공제로 인상에 따라 공제로 수입이 '24년도(84억 7,500만원) 보다 52억 7,2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수입계획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계획**은 194억 7,200만원으로 '24년도(155억 1,300만원)보다 39억 5,800만원 증액하여 운용계획한 바,

○ 수입계획의 경우, ①'24년도말 기금조성액을 재원으로 하는 **예치금회수** 15억 6,700만원, ②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부족분에 대한 **기타지원금** 32억 7,200만원, ③공제료, 소방사업 수익 등 **기타수입** 144억 3,200만원, ④ **이자수입** 2억원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바,

〈표 2-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수 입 항 목	세 부 내 역	2 0 2 5 년 도		2024년도 (B)	증 감 (A-B)
		(A)	구 성 비		
합	계	19,472	100.0	15,513	3,958
① 기타지원금	학교안전공제회기금지원금	3,272	16.8	2,614	658
② 이 자 수 입	예 금 이 자	200	1.0	142	58
③ 기 타 수 입	소 계	14,432	74.1	9,224	5,207
	공 제 료	13,747	70.6	8,475	5,272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79	0.4	16	62
	소 방 사 업 수 익	220	1.1	200	20
	여행자동행공제사업수익	75	0.4	65	10
	학 교 폭 력 피 해 구 상 금	263	1.4	275	△11
	법 인 세 환 금 금	40	0.2	44	△4
	잡 수 입	5	0.0	15	△10
	보 조 금 반 납 금 수 입	1	0.0	-	1
	교원보호공제사업수익	-	-	133	△133
④ 예치금회수	전기예치금및임차보증금	1,567	8.0	3,532	△1,96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234 ('24.11. 1)

- **기타지원금**은 공제기금 고갈에 따른 공제급여 부족분(32억 7,200만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보조하는 것으로, 기금소관부서인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서울시교육청의 '25년도 예산안에도 학교안전공제회지원금 32억 7,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안전공제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공제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로 산정기준에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단가를 결정하고 있는 바,
 - 교육부의 「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교육부 기준공제료는 학생 1인당 12,550원(학교급별 평균단가)으로 금년도(8,925원) 대비 40.6%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도 공제회에서 학교안전공제료를 교육부 기준공제료 대비 10% 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30% 이내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 공제회가 '25년도 학교안전공제료를 교육부 기준공제료 대비 30.0% 인상하여, 학생 1인당 공제료(평균단가)를 금년도 9,818원 보다 66.2%(6,497원) 상승한 16,315원으로 산정한 것임

〈표 2-9〉 2025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

구 분		유	초	중	고	평균단가
2025년도	공제회단가(A)	5,200	9,100	22,750	28,210	16,315
	교육부고시(B)	4,000	7,000	17,500	21,700	12,550
2024년도	공제회단가(C)	3,960	5,170	12,430	17,710	9,818
교육부 고시 대비 증감률 [D=(A-B)/B]		30.0	30.0	30.0	30.0	30.0
전년도 대비 공제료 증감률 [E=(A-C)/C]		31.3	76.0	83.0	59.3	66.2

- 지난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학교안전공제로 증가율은 평균 9.2%였으나, '25년도는 전년도(18.0%) 보다 48.2%p 증가한 66.2%로 인상되어 '25년도 **공제로** 수입이 '24년도(84억 7,500만원) 보다 52억 7,200만원 증액된 것이 공제기금 확보 요인으로 사료됨

〈표 2-10〉 2021~2025년도 학교안전공제로(학교급별 평균단가)

(단위 : 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교육부 고시(평균단가)	6,325	7,075	7,925	8,925	12,550
전년대비 증가율	-	11.9	12.0	12.6	40.6
공제회(평균단가)	6,958	7,425	8,323	9,818	16,315
고시금액 대비 증가율	10.0	4.9	5.0	10.0	30.0
전년대비 증가율	-	6.7	12.1	18.0	66.2

- 아울러 '24년도(26억 1,400만원)에 이어 '25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동 기금에 기타지원금 32억 7,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공제로 현실화를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금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방사업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회가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 대한 '25년도 예상 수익금을 반영한 것으로 '24년도(2억원) 보다 2,000만원 증가한 2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 **보조금반납금수입**은 기타지원금 보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반납하기 위해 100만원 순증한 것이며 **이자수입**의 경우, '24년도(1억 4,200만원) 보다 5,800만원 증가한 2억원을 수입계획한 것으로 제출됨
-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예치금회수(13억 1,900만원)와 임차보증금회수(2억 4,800만원)로 '24년도(35억 3,200만원) 보다 △19억 6,400만원 감소한 15억 6,700만원을 수입계획한 것이나,

-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을 회수한 수입을 편성하는 세입과목인 **예치금회수**에 공제회 사무소 **임차보증금회수금**(2억 4,800만원)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회수되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편성하는 수입과목인 **보증금회수**(장기임차보증금회수)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기금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수입계획을 편성함에 있어 수입과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동 기준에는 기금 수입계획 작성 시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수입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보증금 회수금**은 임대차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회수금이 발생하는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 공제회의 경우, 사무소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매년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는 특수성은 이해되나, 매년 상시 편성하기보다는 임대차계약 만료 등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출계획은 '24년도(155억 1,300만원)보다 39억 5,800만원 증액된 194억 7,200만원으로 정책사업 기준 ①**교수학습활동지원**(128억 4,500만원), ②**재무활동**(49억 9,700만원), ③**기관운영**(2억 6,200만원), ④**예비비및기타**(200만원), ⑤**인건비**(13억 6,400만원)로 지출계획 한 것으로 확인됨
- **재무활동**중 **예치금**의 경우, 보유준비금(39억 1,600만원)과 임차보증금(2억 4,800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예치금(4,400만원), 학교 폭력피해지원예치금(7억 8,700만원)으로 '24년도(15억 6,700만원) 보다 34억 2,900만원 증가한 49억 9,700만원으로 지출계획한 것이나,
 -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을 편성하는 세출과목인

예치금에 공제회 사무소 **임차보증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을 편성하는 세출과목인 **민간이전**(장기임차보증금)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기금 지출계획의 ‘목’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과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동 기준에는 기금 지출계획 작성시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지출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등의 사유로 지출이 발생하는 해당 연도의 지출로 반영하여야 하나, 매년 상시 편성하기보다는 실제 지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임차보증금의 **단위사업**은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인 **예치금**, **세부사업**은 공제기금의 적립금인 **보유준비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임차보증금이 적정한 사업에 편성되도록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신설 또는 재구조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비비 및 기타중 반환금**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기타지원금 보관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반환하기 위해 200만원을 순증한 것으로, **정책사업인 예비비 및 기타**를 신설하여 **반환금**을 지출계획 한 것으로 확인됨
- 동 기금의 경우, 교육부 훈령인 관련 기준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따라 **분야·부문**이 **예비비**에 속한 **정책사업인 예비비 및 기타**를 신설하여 **반환금**을 지출계획 한 것으로 사료되나,
 - 교육부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기금의 예비비 편성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분야·부문’인 예비비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 사례로 판단됨

- 다만, 교육부의 동 기준에는 지출계획중 ‘분야·부문’은 교육부 훈령이 정하는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정책·단위·세부사업’은 각 기금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반환금의 **분야·부문**은 교육부 훈령중 **예비비를 제외한** 것으로 새로 설정하되 **정책·단위·세부사업**은 반환금 편성에 적절하도록 기금의 사업 분류에 대한 개선이 건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1〉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2025년도		2024년도 (B)	증감액 (A-B)
				(A)	구성비		
합계				19,472	100.0	15,513	3,958
① 교수학습활동지원				12,845	66.0	12,118	726
	학생생활지도			12,845	66.0	12,118	726
		공제사업		12,202	62.7	11,373	828
			공제급여지급	11,781	60.5	10,970	810
			전문가위탁	31	0.2	34	△3
			보상심사위원회	21	0.1	16	4
			소송업무수행	263	1.4	246	16
			비용의보전	25	0.1	25	-
			시스템운영및개선	19	0.1	19	-
			중앙회분담금	60	0.3	60	-
		예방사업	198	1.0	189	8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28	0.1	30	△1
	학교폭력피해지원			416	2.1	525	△109
	② 재무활동				4,997	25.7	1,567
	예치금			4,997	25.7	1,567	3,429
		보유준비금		4,164	21.4	574	3,589
			보유준비금	3,916	20.1	326	3,589
			임차보증금	248	1.3	248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예치금			44	0.2	70
	학교폭력피해지원금예치금			787	4.0	922	△134
③ 기관운영				262	1.3	269	△6
	기관운영비			262	1.3	269	△6
		업무추진비		25	0.1	23	1
		운영비		236	1.2	245	△8
④ 예비비및기타				2	0.0	-	2
	예비비및기타			2	0.0	-	2
		제지출금등		2	0.0	-	2
		반환금(보조금 및 이자 등)		2	0.0	-	2
⑤ 인건비				1,364	7.0	1,557	△192
	근로자인건비			1,364	7.0	1,557	△192
		인건비		1,364	7.0	1,557	△192
			보수	976	5.0	1,221	△244
			수당	267	1.4	229	37
			4대보험		120	0.6	10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234 ('24.11. 1)

(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 조성규모

□ 동 기금은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

○ 관련 법령은 동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 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안정화 계정’만 운용하고 있어 해당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한 것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24년 도말 조성액(3,574억 3,900만원)보다 7.1%, 253억 4,400만원 증가한 3,827억 8,400만원으로 계획한 것임

〈표 2-1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24년도 말 조 성 액 (a)	'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25년도 말 조 성 액 (d=a+b-c)	증 감 (e=d-a)	증감률 (e/a)
	수 입 계 획 (b)	지 출 계 획 (c)			
357,439	25,344	-	382,784	25,344	7.1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계획은 3,827억 8,400만원으로 '24년도(6,874억 3,900만원) 보다 △3,046억 5,500만원 감액하여 운용계획한 것으로,

○ '25년도 수입계획중 **이자수입**은 253억 4,4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회수 될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하고, **예치금회수**는 3,574억 3,900만원을 계획한 것임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여 '24년도 와 동일하게 수입액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2-13〉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과 목				'25년 수입액 (A)	'24년 수입액 (B)	증 감 (A-B)
장	관	항	목			
합			계	382,784	687,439	△304,655
자			체 수 입	25,344	21,776	3,567
	이		자 수 입	25,344	21,776	3,567
		이	자 수 입	25,344	21,776	3,567
			예 금 이 자 수 입	25,344	21,776	3,567
기			타	357,439	665,663	△308,223
	예		치 금 회 수	357,439	665,663	△308,223
		예	치 금 회 수	357,439	665,663	△308,223
			예 치 금 회 수	357,439	665,663	△308,223
내			부 거 래	-	-	-
	전		입 금	-	-	-
		전	입 금	-	-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전 입 금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234 ('24.11. 1)

○ 지출계획의 경우,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출계획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 이내)을 정하고 있는 바,

■ 관련 조례 제4조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용도를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나,

■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4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 당시, 동
규정만으로는 세입재원의 기준시점이 결산인지 예산인지 불명확하여
기금 재원의 지출기준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하였고, 교
육부의 2022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 결과에서도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세입재원을 특정하
여 명시하고 비교기준을 ‘과거 3년 평균금액’에서 ‘직전년도’로 수정하여
지난 '24년 6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①세입 재원의 적용 시
점(결산 또는 본예산)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②과거 3년 평
균 금액을 직전년도로 수정하는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교육위
원회로부터 지적되어 일부 내용만 개정된 것으로 확인됨

- **재무활동중 예치금**은 3,827억 8,400만원을 지출계획한 바, 전년도 예치
금과 '25년도에 발생할 이자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사료됨

〈표 2-14〉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 감 (A-B)
합			계	382,784	687,439	△304,655
재		무	활 동	382,784	687,439	△304,655
		내	부 거 래 지 출	-	330,000	△330,000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전 출 금	-	330,000	△33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330,000	△330,000
		예	치 금	382,784	357,439	25,344
			예 치 금	382,784	357,439	25,344
			예 치 금	382,784	357,439	25,34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234 ('24.11. 1)

(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1) 조성규모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21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2년도부터 운용하는 기금이나, '23년 9월 폐지조례 공포와 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수입·지출계획을 하지 않고 예치금만 존속시켜 둔 기금으로 '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24년도말 조성액(4억 5,000만원)에서 이자수입 1,500만원이 증가한 4억 6,500만원으로 제출하였음

〈표 2-15〉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24년도 말 조성액 (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 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증감률 (e/a)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450	15	-	465	15	3.3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계획액은 4억 6,5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상되는 이자수입(1,500만원)과 전년도말 조성액에 대한 **예치금회수**(4억 5,000만원)로 계획하고, **지출계획**은 수지균형에 따라 4억 6,5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2-1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과 목				'25년 수입액 (A)	'24년 수입액 (B)	증 감 (A-B)
장	관	항	목			
합 계				465	450	15
자 체 수 입				15	31	△16
	이 자 수 입			15	31	△16
		이 자 수 입		15	31	△16
			예 금 이 자 수 입	15	31	△16
기 타				450	419	31
	예 치 금 회 수			450	419	31
		예 치 금 회 수		450	419	31
			예 치 금 회 수	450	419	31

〈표 2-17〉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정 책	단 위	세 부	사업내역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 감 (A-B)
합 계				465	450	15
재 무 활 동				465	450	15
	예 치 금			465	450	15
		예 치 금		465	450	15
		예	치 금	465	450	15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 조성규모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25년도에는 민간투자사업상환과 예치금에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 제출됨
- 동 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24년도말 조성액(9,449억 3,100만원) 대비 △8.2%, △776억 9,800만원 감소한 8,672억 3,200만원으로 계획 하여 제출하였음

〈표 2-1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24년도 말 조성액 (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 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증감률 (e/a)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944,931	30,945	108,644	867,232	△77,698	△8.2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계획**은 9,758억 7,600만원으로 '24년도(1조 2,679억 1,100만원) 보다 △2,920억 3,400원 감액하여 운용계획한 바,
- 수입계획중 **이자수입**은 '24년도(314억 2,000만원) 보다 △4억 7,400만원 감액한 309억 4,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전년도 예치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치금회수**는 '24년도(1조 2,364억 9,100만원) 보다 △2,915억 6,000만원 감소된 9,449억 3,1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하였음

〈표 2-1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입과목				'25년 수입액 (A)	'24년 수입액 (B)	증 감 (A-B)
장	관	항	목			
합			계	975,876	1,267,911	△292,034
자		체	수입	30,945	31,420	△474
	이		자수입	30,945	31,420	△474
		이	자수입	30,945	31,420	△474
			예금이자수입	30,945	31,420	△474
기			타	944,931	1,236,491	△291,560
	예		치금회수	944,931	1,236,491	△291,560
		예	치금회수	944,931	1,236,491	△291,560
			예치금회수	944,931	1,236,491	△291,560
내			부거래	-	-	-
	전		입금	-	-	-
		전	입금	-	-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	-

○ 지출계획은 '24년도(1조 2,679억 1,100만원)보다 △2,920억 3,400만원 감액된 9,758억 7,600만원으로 계획한 바,

-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24년도(1조 2,679억 800만원)보다 △2,920억 3,300만원이 감액된 9,758억 7,400만원으로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상환**(BTL 운영, 원금, 이자)과 **예치금**으로 세부사업을 지출계획한 바,

■ **민간투자사업상환**은 상환기간이 '07년부터 '32년까지인 141개교의 BTL 원금·이자·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23년도에 신설한 사업으로 '24년도 지출계획액(1,072억 6,500만원) 보다 13억 7,700만원 증액된 1,086억 4,200만원을 지출계획 하여 제출하였음

- **재무활동중 예치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24년도 지출 계획액(1조 1,606억 4,300만원) 보다 △2,934억 1,000만원 감액된 8,672억 3,200만원을 지출계획 한 바,
 - 동 기금의 주요사업인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학교단위공간혁신 사업은 사전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의 설계 전 각종 절차로 인해 '25년도에는 예산집행 계획이 없어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기금은 수·지 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4년도에 지출계획된 **예치금**은 '25년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에 연동하여야 할 것이나, 동 기금의 경우, 금번 제출된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24년도 지출계획의 예치금(1조 1,606억 4,300만원)과 '25년도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액(9,449억 3,100만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사업부서에서 지난 '24년 10월, 기금운용계획을 최종(2차)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24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을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지 않고 최초계획된 '24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계획안중 '24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을 최종 변경된 내용으로 반영하고, 전년대비 증감액 등 연동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사업인 **교육행정일반**은 기본경비로 '24년(300만원) 보다 △100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지출계획 한 바, 관련 기준에 따라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 감 (A-B)
합			계	975,876	1,267,911	△292,034
교육			행정일반	2	3	△1
	기		관 운영	2	3	△1
		위	원 회 운영	2	3	△1
			위 원 회 수 당	2	3	△1
재			무 활 동	975,874	1,267,908	△292,033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료	108,642	107,265	1,377
		민	간 투 자 사 업 상 환	108,642	107,265	1,377
			B T L 원 금	64,920	63,435	1,485
			B T L 이 자	12,892	13,774	△882
			B T L 운 영 비	30,829	30,055	774
	예		치 금	867,232	1,160,643	△293,410
		예	치 금	867,232	1,160,643	△293,410
			예 치 금	867,232	1,160,643	△293,410

(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1) 조성규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은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16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임

○ 신청사 건립(청사이전추진단) 사업의 특성상 수개년도에 걸친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재원 투입이 필요함에 따라 재원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24.11.28)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2-2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 - B)
	계 (A)	교특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계 (B)	비율자성 사업비	
2016	5,927	5,908	18	-	-	5,927
2017	12,005	11,930	74	43	43	11,961
2018	28,368	27,957	410	967	967	27,401
2019	7,820	7,526	293	3,500	3,500	4,319
2020	14,004	13,252	752	3,677	3,677	10,327
2021	16,868	15,987	881	1,028	1,028	15,839
2022	42,816	41,015	1,801	3,424	3,424	39,391
2023	31,818	31,127	690	6,826	6,826	24,991
2024	1,953	-	1,953	73,788	73,788	△71,834
2025	7,316	-	7,316	75,642	75,642	△68,326
합계	168,900	154,706	14,193	168,900	168,900	-

※ 자료근거 :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p.70

※ 조성액 및 집행액에서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는 제외됨

※ 2023년까지는 결산액 기준, 2024~2025년은 계획액 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의 '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0원으로 '24년도말 조성액(683억 2,600만원)과 '25년도 수입계획액(73억 1,600만원)을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2-2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24년도 말 조성액 (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 말 조성액 (d=a+b-c)	증 감 (e=d-a)	증감률 (e/a)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68,326	7,316	75,642	-	△68,326	△100.0

2) 운용계획

- 동 기금의 '25년도 운용계획은 756억 4,200만원으로 '24년도(1,354억 1,700만원) 보다 △597억 7,400만원 감액하여 운용계획한 바,
- 수입계획은 756억 4,200만원으로 **이자수입** 73억 1,600만원과 '24년도말 기금조성액을 재원으로 하는 **예치금회수** 683억 2,6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고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수입계획 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됨

〈표 2-2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입과목				'25년 수입액 (A)	'24년 수입액 (B)	증 감 (A-B)
장	관	항	목			
합			계	75,642	135,417	△59,774
자			체 수 입	7,316	1,953	5,362
	이		자 수 입	7,316	1,953	5,362
		이	자 수 입	7,316	1,953	5,362
			예 금 이 자 수 입	7,316	1,953	5,362
기			타	68,326	133,463	△65,137
	예		치 금 회 수	68,326	133,463	△65,137
		예	치 금 회 수	68,326	133,463	△65,137
			예 치 금 회 수	68,326	133,463	△65,137
내			부 거 래	-	-	-
	전		입 금	-	-	-
		전	입 금	-	-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전 입 금	-	-	-

○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수지균형에 따라 756억 4,200만원을 계획한 바,

- 정책사업인 **기관운영중 신청사 건립** 사업은 '24년(670억 9,100만원) 보다 85억 5,100만원 증액한 756억 4,200만원(시설비 616억 6,500만원, 이사비 등 110억 8,200만원, 감리비 20억 4,100만원 등)을 지출계획 하고,
- **재무활동중 예치금**은 '24년(683억 2,600만원) 대비 △100.0% 감액하여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됨

〈표 2-2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25년 지출액 (A)	'24년 지출액 (B)	증감 (A-B)
합			계	75,642	135,417	△59,774
기			관 운영	75,642	67,091	8,551
	교육행정기관시설			75,642	67,091	8,551
		기관시설유지관리		75,642	67,091	8,551
		신청사건립		75,642	67,091	8,551
			설계비	58	-	58
			시설비	61,665	64,663	△2,997
			감리비	2,041	1,770	271
			시설부대비	796	168	627
			이사비 등	11,082	-	11,082
			급식기구	-	490	△490
재			무 활동	-	68,326	△68,326
	예		치 금	-	68,326	△68,326
		예	치 금	-	68,326	△68,326
			예 치 금	-	68,326	△68,326